

의안번호	2204476
의 퇴 인	조경태의원
회 답 일	2024.10.30.
추계번호	24D4172

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9조의2 (유엔참전용 사에 대한 예우) 신설	국가는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, 국가의 의료기관[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“보훈병원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 의료지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예우를 할 수 있음(제1항) 제1항에 따른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9조의2(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) 신설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, 보훈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 등 예우를 해줄 경우,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
- 국가보훈부에 따르면, 생존 유엔참전용사는 2025년 39만명 정도로 추정됨

[표 1] 생존 유엔참전용사 인원 추정

(단위: 명)

연도	유엔참전국(미국포함)	미국
2025	390,651	355,138
2026	308,559	280,508
2027	240,482	218,620
2028	184,752	167,956
2029	139,818	127,107

주: 유엔군 참전용사 중 90%가 미국 참전용사였다는 점을 고려하여, 미국의 생존 유엔참전용사 추정인원에 10%를 가산하여 유엔군 생전 참전용사를 추정

자료: 국가보훈부("Analytics Service", Office of Enterprise Integration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, Augst 2022)

- 다만, 개정안은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생존 유엔참전용사에게 지급될 참전명예수당 급여액 등 예우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또한, 유엔참전용사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자 비율, 우리나라의 보훈병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인원 비율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